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농협·지구별수협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신설〉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57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농협·지구별수협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신설	2
※ 참고자료	
1. 인구감소지역(89개) 지정 현황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5.
3. 회부연월일 : 2026. 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이 발달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지역 주민들은 주로 농협이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적으로 지역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14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농협·지구별수협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신설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있음(안 제26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설>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1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제2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¹⁾ 제2조제13호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상인²⁾만이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³⁾

개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등의 상인 외에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⁴⁾에 따른 인구감소지역⁵⁾의 지역농업협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백년소상공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204호, 2025.12.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사용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14.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동조합(지역농협)⁶⁾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수협)⁷⁾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온누리상품권은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의 생필품과 농수산물 구매 비중이 높은 지역농협 및 지구별수협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소비 만족도가 높아지고, 농·수협의 수익이 현지 농어민인 조합원들에게 배당되어 일정 부분 지역 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행정안전부는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음(참고자료1).

6)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도입 취지가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영세상인의 매출 증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농협 및 지구별수협의 개별가맹점 등록 허용을 통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범위 확대의 적합성 내지 기존 전통시장 가맹점의 매출 감소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자단체⁸⁾⁹⁾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¹⁰⁾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립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제2204971호)은 2024년 10월 28일 발의되었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유통망을 가진 지역농협 및 지구별수협에 대한 지원은 취약상권의 매출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농협 및 지구별수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소(하나로마트 등)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품권 사용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6. 6. 17. 시행)은 영세상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농협 및 지구별수협의 매출액 규모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만큼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참고자료】

1	인구감소지역(89개) 지정 현황
---	-------------------

구분	시·군·구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관심지역 18개)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자료: 행정안전부